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(김영환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27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2. 16.

발 의 자 : 김영환 · 박홍배 · 한준호
이기현 · 이인영 · 김성희
최혁진 · 박상혁 · 허영
박정 · 복기왕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창업지역의 수도권 또는 수도권과 밀역제권역 여부 및 기업 유형에 따라 최초 사업소득 발생 후 5년간 25%부터 100%까지의 세액감면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있음.

그러나 일부 접경지역의 경우 남북분단으로 인한 지역적 특수성으로 낙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밀역제권역에 속한다는 이유로 다른 지역에 비해 축소된 혜택을 받고 있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.

이에 해당 접경지역의 경우에는 수도권과밀역제권역에 해당하는 혜택이 아닌 별도의 상향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6 조제1항 등).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에 제10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의3. “접경지역”이란 「접경지역 지원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을 말한다.

제6조제1항제1호나목1) 중 “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”을 “수도권 외의 지역,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 또는 수도권의 접경지역”으로 하고, 같은 목 2) 중 “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”을 “수도권과밀억제권역, 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”으로 하며, 같은 목 3) 중 “수도권과밀억제권역”을 “수도권과밀억제권역(접경지역은 제외한다)”로, “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”을 “수도권 외의 지역,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 또는 수도권의 접경지역”으로 하고, 같은 목 4) 중 “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”을 “수도권과밀억제권역, 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”으로 한다.

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 중 “인구감소지역 및, 「접경지역 지원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”을 “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”으로 하고, 같은 목 1) 단서 중 “「접경지역 지원 특별법」 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”을 “접경지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

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. 이하 제6항에서 같다)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.

1. 창업중소기업의 경우: 다음
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
가. (생략)

나. 2026년 1월 1일 이후에
창업한 경우

1)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
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에
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
업의 경우: 100분의 100

2) 수도권(수도권과밀억제 권역과 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)에서 창업한 청년

[illegible]

1. -----

가. (현행과 같음)

4. _____

1) 수도권 외의 지역,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 또는 수도권의 접경지역-----

2) -----수도권과밀억제
권역, 인구감소지역 및 접
경지역-----

창업중소기업의 경우: 100분의 75 3) <u>수도권과밀억제권역</u>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과 <u>수도권 외의 지역</u> 또는 <u>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</u>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: 100분의 50 4) 수도권(<u>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</u>은 제외한다)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: 100분의 25 2. (생략) ② ~ ⑬ (생략) 제99조의4(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)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(이하 이 조에서 “1세대”라 한다)가 2003년 8월 1일(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)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(이하 이 조에서 “농어촌주택등취	----- ----- 3) <u>수도권과밀억제권역(접경지역은 제외한다)</u>----- ----- <u>수도권 외의 지역,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 또는 수도권의 접경지역</u>----- ----- ----- 4) -----<u>수도권과밀억제권역, 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</u>----- ----- ----- 2. (현행과 같음) ② ~ ⑬ (현행과 같음) 제99조의4(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---	--

득기간”이라 한다)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(이하 이 조에서 “농어촌주택등”이라 한다)을 취득(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)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고 있던 다른 주택(이하 이 조에서 “일반주택”이라 한다)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「소득세법」 제89조제1항 제3호를 적용한다.

1.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
갖춘 주택(이 조에서 “농어촌
주택”이라 한다)

가. 취득 당시 「지방자치분
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
한 특별법」 제2조제13호
에 따른 기회발전특구(인
구감소지역 및, 「접경지
역 지원 특별법」 제2조제
1호에 따른 접경지역이 아
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
의 기회발전특구는 제외

[illegible]

1. -----

가. -----

-----인
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--

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--

다. 이하 이 조 및 제5장의11에서 “기회발전특구”라 한다)에 소재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「지방자치법」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·면 또는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에 소재할 것 1) 수도권지역. 다만, 「<u>접경지역 지원 특별법</u>」 제2<u>조에 따른 접경지역</u>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. 2) ~ 5) (생략) 나. (생략) 2. (생략) ② ~ ⑧ (생략)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) -----, -----<u>접경지역</u>----- ----- -----. 2) ~ 5) (현행과 같음) 나. (현행과 같음) 2. (현행과 같음) ② ~ ⑧ (현행과 같음)
---	--